

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45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7.

발 의 자 : 박성준 · 윤종균 · 전용기
노종면 · 강유정 · 고민정
추미애 · 허종식 · 정진욱
양문석 · 김민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음. 현행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.

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,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,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,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,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2조).

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,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.

1. 대통령

2. 대통령과 「민법」 제779조가 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.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. 다만,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(選數)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, 선수(選數)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.

④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해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(제3항의 경

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,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. 다만,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(選數)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, 선수(選數)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.</u> <u>④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해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(제3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,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.</u> <u>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.</u>
--	---